

산업안전 · 위생지도사 제도 및 운영에 대한 인식도 조사연구

원정일 · 박종태^{1) †}

충북과학대 환경생명과학과 · ¹⁾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산업의학교실

Survey on the Industrial Safety & Hygiene Consultant System and It's Operational Issues

Jeung-Il Won · Jong-Tae Park^{1) †}

Chungbuk Provincial College of Science & Technology ·

¹⁾Department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Korea University

The Korean government has introduced the industrial safety & hygiene consultant (ISHC) system to improve worksite health and safety level by providing specialized industrial safety & hygiene (S&H) services in 1996. Despite of initial hopeful expectation it has been said that this plan might fail to settled down and maintain its purpose. This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operational issues and problems concerning the ISHC system, that would direct the way of change and future role. Questionnaire were sent to ISHC, professional engineer, agencies for occupational injury prevention, S&H specialist in the corporation nationwide and totally 256 people responded to it having 62.7% of response rate. The result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One hundred and forty two cases of safety assessment and 27 cases of process safety reports were the six years' results since 1996 the ISHC program had first been introduced. This results showed that injury prevention activities of ISHC had been stagnant.

2. The 78.8% of respondents had negative opinion about

injury prevention activities of ISHC program.

3. The operational problems of ISHC were lack of understanding of company about ISHC, low systematization of work items, duty overlapping with agencies for occupational injury prevention, low support by government. in order.

4. It was suggested that abolition of ISHC and promotion of professional engineer system should be considered.

5. To promote professional engineer system it was suggested that the professional engineer could conduct consulting service and ISHC should be integrated with the expert system.

Key Words : industrial safety & hygiene consultant (ISHC), consulting, professional engineer system

접수일 : 2005년 9월 28일, 채택일 : 2005년 12월 10일

† 교신저자 : 박종태(경기도 안산시 고잔1동 516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산업의학교실
TEL : 031-412-5400, Fax : 031-412-5394, E-mail : impjt@korea.ac.kr)

I. 서론

노동은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되었으며, 노동의 결과로 인류는 발전해 왔지만 산업현장이 복잡하고 다양화되면서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안전·보건상의 문제가 대두되었고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일련의 사건 등은 생산능력의 저하는 물론 기업에 대한 이미지도 손상으로 인적, 물적인 막대한 손실을 가져다 주었다.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각종 산업이 발전하고 더불어서 이에 종사하는 취업노동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며, 새로운 산업기술의 발달로 양질의 제품에 대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경영의 자산 중에 하나인 노동력을 확보하는 일이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시대적인 사회의 경향을 들 수 있다(박종성, 1999).

이와 같이 근로자를 유해·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도에 과학적인 재해예방대책의 필요성에 의하여 제정되었다. 그러나 사회가 빠르게 발전하고, 경제 여건이 달라지는 현실 속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변화도 예외는 아니었고, 1993년 4월에 시행된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제정에 의해 사업장내의 자율적 안전·보건체제가 취약해짐에 따라 산업재해 증가의 위협요인으로 부상하였다(노동부, 2003).

특히 기술의 진보와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자체전문가를 수용하기 어려운 중·영세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는 외부의 산업안전보건 전문가에 의한 기계·전기·화학적 유해·위험요인 등 근로자를 위협하는 요인에 대해 전문적으로 지도·조언을 할 수 있는 민간 인력이 필요하며, 또한 서비스의 경제화, 노동인구의 고령화, 국제화 등에 따라 발생하는 산업안전

보건상의 새로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상황에 적합한 산업재해방지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실정에 있다(노동부, 2001).

이에 따라 정부는 기술, 지식 및 현장경험을 겸비한 전문가를 배출시켜 산업재해방지대책의 추진과 아울러 장기적으로 민간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의 여건을 조성하고자 1995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제6장의2에 산업안전·위생지도사(이하 ‘지도사’)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지도사는 사업장의 공정안전평가, 지도 및 자문, 안전보건관련계획서 작성 등 컨설팅 업무를 사업주와 계약에 의해 수행하는 전문가로 정부는 시험을 통해 컨설턴트 유자격자를 공인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6년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시험 시행 기관이 되어 169명의 산업안전·위생지도사를 배출하였다(노동부, 1995).

그러나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 등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지도·심사·확인 등 유사한 역할을 하는 기관과의 업무 중복과 대행기관, 재해예방지도기관 등의 지정인력 요건에 기술사와 지도사가 같이 규정되어 있어 기술사와의 업무 영역이 유사함에 따른 혼란이 발생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지원 정책이 대행기관 등 재해예방민간기관에 집중되어 있어 지도사에 대한 수요의 창출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민간 자율적으로 안전·보건·환경을 통합한 컨설팅 시장에 지도사의 역할이 성숙되지 못하는 등에 따라 재해예방단체 및 기술사회 등에서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지도사 시험시행의 유보를 건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제시되어 제1회 이후 지금까지 지도사의 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의 운영이 미흡한 상태에 있다(한국산업안전위생지도사 연합회, 2001; 한국

산업안전공단, 1999).

따라서 사업장내의 근본적인 안전·보건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지도사제도의 운영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지도사의 특성화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도출함으로써 동제도의 필요성 여부 및 향후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도사의 업무만족 및 현 제도의 필요성, 발전방안 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우리나라 산업안전·위생지도사 제도의 현황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며, 향후 지도사 제도의 방향 수립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자 선정

연구 대상은 지도사, 기술사, 재해예방전문단체 및 기업체 전문가였다. 지도사는 시험주관 및 관리기관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등록된 지도사(총 169명) 중 168명, 기술사협회에 등록된 회원(총 1,132명) 중 111명, 재해예방전문단체의 전문가 60명 및 기업체 전문가 55명(이하 ‘전문가’)과 한국산업안전공단주관 전문분야 기술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 90명 등 총 48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선정은 산업안전·위생분야가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선정하였으며, 본 연구 결과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한국산업안전공단 및 노동부에 근무하는 전문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설문지 구성

표 1. 지도사 및 전문가 설문지의 설문항목

구 분	자 료 군	내 용
지도사 (ISHC ¹⁾)	기본적인 정보 업무실적 현황 인지도	지도사의 소속, 업무분야, 취득자격 현황, 시험면제 여부 산업재해 예방지도 실적유무, 실적건수 및 내용, 청구비용 지도사의 업무수행능력, 지도사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
	향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사 제도의 발전방향 : 시험주관기관, 시험제도개선내용, 관리방법 ● 지도사 제도의 폐지에 따른 방향 :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미치는 영향 폐지해야할 법적 조항의 범위 인정해야될 자격범위 및 활동영역
전문가 (S&H ²⁾ specialist)	기본적인 정보 인지도	응답자 소속, 업무분야, 취득자격 현황 지도사 제도의 인지여부 및 문제점 파악
	향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사제도의 발전방향 ● 지도사제도의 폐지에 따른 방향

¹⁾Industrial Safety & Hygiene Consultant

²⁾Safety & Hygiene

표 2. 조사대상 현황 및 회수율

대 상 명	배 포	회 수	회수율 (%)	전체의 비중(%)	반 송
지 도 사	168	41	36.3	16.0	55
기 술 사	111	32	35.6	12.5	21
재해예방기관	60	46	76.7	18.0	-
기 업 체	55	47	85.5	18.4	-
직 접 설 문 ¹⁾	90	90	100.0	35.2	-
합 계	484	256	62.7	100.0	76

¹⁾제36회 한국산업안전공단주관 전문분야 기술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직접설문 조사한 결과

²⁾우편 조사한 결과 수취인 미거주 및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된 수

설문지 개발(한국산업안전공단, 2001)은 현행 지도사 제도 및 운영 현황의 분석자료를 토대로 요소를 개발하여 토론과 회의를 거쳐 평가 항목을 선정하였다.

설문지는 크게 지도사용과 전문가

용으로 구분하여 개발하였으며 개략적인 설문항목은 기본정보(소속, 업무분야, 취득자격 등), 업무실적(실적, 건수, 내용 등), 인지도(업무수행능력, 문제점 의견 등), 향후방향(발전방향, 폐지방향 등) 이었다(표 1).

3. 조사방법

개발된 설문지는 우편 및 직접설문 방식을 통하여 총 484명에게 배포하여 256명(회수율 62.7%)의 설문을 회수하였으며 대상별 자세한 사항은 표

표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현황

분 류	항 목	응답자(n=256, n=244 ¹⁾)	지도사(n=41)
근무지	기업체	109 (42.6)	12 (29.3)
	산업안전 전문기관	58 (22.7)	18 (43.9)
	산업보건 전문기관	50 (19.5)	3 (7.3)
	대학 및 연구기관	29 (11.3)	3 (7.3)
	기타	10 (3.9)	5 (12.2)
업무분야	산업위생	99 (38.7)	5 (12.2)
	건설안전	71 (27.7)	29 (70.7)
	화공안전	20 (7.8)	4 (9.6)
	기계안전	18 (7.0)	0 (0.0)
	전기안전	16 (6.3)	2 (4.9)
	산업간호	11 (4.3)	-
	기타	21 (8.2)	1 (2.4)
자격구분	산업위생 관리 기사	58 (23.8)	0 (0.0)
	산업안전 관리 기사	46 (18.9)	1 (2.4)
	산업안전 지도사	31 (12.7)	4 (9.8)
	산업안전 관리 기술사	19 (7.8)	31 (75.6)
	산업안전 관리 산업기사	19 (7.8)	0 (0.0)
	산업위생 관리 기술사	17 (7.0)	5 (12.2)
	산업간호사	12 (4.9)	0 (0.0)
	산업위생 관리 산업기사	6 (2.5)	0 (0.0)
	산업위생 지도사	5 (2.0)	0 (0.0)
	기타	31 (12.7)	0 (0.0)

¹⁾ 자격구분에 대한 응답자수

2와 같다. 지도사의 운영실태를 파악하는 설문은 지도사에게 배포되어 인지도를 분석하였으며, 제도에 대한 전문가의 인지도는 전문가 및 재해예방기관에 배포되어 회수된 것에 대해 분석을 하였다. 우편설문조사는 수취인 미거주 및 주소불명으로 반송된 76명을 제외하였고, 직접설문의 경우 제36회 한국산업안전공단주관행사의 전문분야 기술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 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기간은 2003년 6월 1일부터 2003년 10월 30일까지 4개월간이었다.

Ⅲ. 연구결과

1. 일반적 현황

산업안전 · 위생지도사 제도에 관한 설문에는 총 256명이 응답하였으며, 응답자별 근무지는 기업체가 42.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산업안전 전문기관 22.7%, 산업보건전문기관 19.5%, 대학 및 연구기관 11.3% 순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의 주체가 되고 있는 지도사는 41명이 응답하였으며 지도사 근무지는 산업안전전문기관 18명(43.9%), 기업체 12명(29.3%), 대학 및 연구기관과 산업보건전문기관이 각 3명(7%)이었다.

응답자의 업무분야를 분석한 결과 산업위생업무가 38.7%로 가장 많았으며, 건설안전 27.7%, 기타 8.2% 순으로 나타났다. 지도사의 업무분야를

분석한 결과 건설안전이 70.7%로 가장 많았으며 산업위생 12.2%, 화공안전 9.8%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취득한 자격을 분석한 결과 산업위생기사가 23.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산업안전관리기사 18.9%, 산업안전지도사가 12.7%, 기타 12.7%로 조사되었으며, 기타는 건축기사, 건설안전기사 및 산업기사, 토목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이 대부분이었다. 안전위생분야 자격을 포괄적으로 분석해 보면 기사 42.7%, 기술사 및 지도사 각각 29.5%, 기타 12.7%, 산업기사 10.3% 순으로 조사되었다. 지도사를 취득한 자격을 보면 산업안전관리 기술사와 지도사를

표 4. 지도사의 산업재해예방 지도실적 건수(1997~2002)

(단위:명)

연 도	업무내용	안전 · 보건 진단실적			공정안전 보고서 심사
		안 전	건 설	보 건	
1997		46	-	-	12
1998		25	-	-	-
1999		22	-	-	9
2000		21	3	-	6
2001		13	2	-	-
2002		9	1	-	76
소 계		136	6	-	27

이중으로 취득한 경우가 35명(75.6%)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산업위생 관리 기술사 5명(12.2%), 산업안전 지도사만 취득한 경우 4명(9.8%), 산업안전관리기사 1명(2.4%)이었으며, 산업위생 지도사만을 취득한 사람은 조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

2. 지도사의 업무현황

96년 제1회 지도사 배출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예방업무 실적은 조사한 결과 응답자 41명 중 5명의 지도사만이 사업주 요청에 의해 산업재해예방지도실적내용 및 건수는 6년 동안 안전진단실적이 총 142건,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가 27건으로 지도실적이 매우 작았으며, 지도실적 1건당 청구비용은 500만원 이하로 조사되어 컨설팅 수입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약하지만 연도별 지도사 실적 건수가 지도사 제도 시행 초기에 비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3. 지도사 제도의 인지 정도 및 지도사의 산업재해예방 활동

설문에 응답한 256명 중 지도사 자격자 41명을 제외한 215명의 전문가

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도사 제도의 인식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8.6%가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모르는 경우가 21.4%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지도사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5).

현재 배출된 지도사가 실제로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에 필요한 지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지도사 활동에 대해 질문한 결과 78.7%가 "거의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일부 기능만 수행하고 있다"가 18.2%, "지도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3.1%로 나타나 대부분의 지도사들은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 활동이라는 지도사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6).

지도사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설문은 기 배출된 지도사가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에 필요한 기술적, 전문적 지도 및 조언에 대한 업무를 하지 못하는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응답자에게 중요도에 따라 3개씩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총 응답 문항 수 740개중 민간의 전문적 지도에 대한 인식 부족이 24.1%로 가장 큰 문제점

표 5. 지도사 제도의 인식유무

항 목	빈 도 수(%)
알고있다	169 (78.6)
모 르 다	46 (21.4)
소 계	215 (100)

표 6. 지도사의 사업장 산업재해예방 활동 수행 여부

항 목	빈 도 수(%)
전문적 지도 · 조언 충실히 이행	8 (3.1)
일부 기능만 수행	46 (18.2)
거의 제 기능 미 수행	199 (78.7)
소 계 (무응답:3명)	253 (100)

표 7. 근무분야별 지도사제도 운영상의 문제점¹⁾

(단위:%)

항 목	근무분야	대학 및 연구기관	산업안전 전문기관	산업보건 전문기관	기업체	기 타	소 계
민간의 전문적 지도에 대한 인식부족		17 (20.5)	39 (24.5)	41 (26.9)	74 (23.3)	7 (25.0)	178 (24.1)
지도사 업무영역의 제도화 부족		19 (22.9)	29 (18.2)	32 (21.0)	68 (21.4)	8 (28.6)	156 (21.1)
재해예방기관과의 업무중복		15 (18.1)	30 (18.9)	22 (14.5)	65 (20.4)	6 (21.4)	138 (18.6)
정부의 지원미흡		10 (12.1)	21 (13.2)	22 (14.5)	44 (13.8)	5 (17.9)	102 (13.8)
전문지식의 부족		6 (7.2)	18 (11.3)	9 (5.9)	27 (8.5)	1 (3.6)	61 (8.2)
지도사 배출 부족		9 (10.8)	9 (5.7)	10 (6.6)	22 (6.9)	0 (0.0)	50 (6.8)
컨설팅 수입의 한계		7 (8.4)	13 (8.2)	15 (9.9)	14 (4.4)	0 (0.0)	49 (6.6)
기타		0 (0.0)	0 (0.0)	1 (0.7)	4 (1.3)	1 (3.6)	6 (0.8)
소 계		83 (100)	159 (100)	152 (100)	318 (100)	28 (100)	740 (100)

¹⁾응답자 1인당 중요도에 따라 3개씩 복수응답

으로 지적하였으며 다음으로 지도사 업무영역의 제도화 부족이 21.1%, 재해예방기관과의 업무중복 18.6%, 정부의 지원미흡 13.8% 순이었다.

응답자의 근무영역별로는 산업안전 및 보건전문기관, 기업체에서는 민간의 전문적 지도에 대한 인식 부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으며 다음으로 지도사 업무영역의 제도화 부족, 재해예방기관과의 업무중복 순으로 지적하였다. 반면 대학 및 연구기관과 기타에서는 지도사 업무영역의 제도화 부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으나 전문적 지도에 대한 인식 부족과 재해예방기관과의 업무중복 등을 역시 중요한 문제점으로 응답하여, 근무영역별로 지도사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다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7).

지도사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취득자격별로 분석한 결과,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는 민간의 전문적 지도에 대한 인식부족, 지도사는 지도사 업무영역의 제도화 부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으며, 산업간호사는 민간의 전문적 지도에 대한 인식부족, 지도사 업무 영역의 제도화

부족, 재해예방기관과의 업무 중복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여 취득자격별로 지도사 제도 운영상의 주요 문제점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8).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들로부터 현행 지도사 제도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제시되어 '96년 제 1 회 시험이후 지도사가 배출되지 않고 있다. 기술사와의 유사한 업무 영역에 따른 혼란 등으로 지도사 제도의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응답자의 견해를 질문한 결과 80.5%가 재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현행 지도사 제도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재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216명에게 재검토 방향에 대해 질문한 결과 76.4%가 지도사를 폐지하고 기술사 업무의 활성화 방안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표 9).

일부 응답자가 제시한 두 항목의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 보면 기술사 업무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기술사를 선진국과 같이 컨

설팅 업무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지도사에 대한 규정을 기술사 제도로의 전환과 건설안전기술사의 전문화와 업무 세분화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지도사 업무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지도사의 지속적인 배출과 지도사 제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정부에서 안전보건업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다양한 분야의 기술지도가 가능하도록 지도사 업무영역의 확대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4. 지도사 제도의 운영방향

지도사 제도의 발전방향 수립을 위해 지도사 시험은 어느 기관에서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62.1%, 한국산업안전공단이 37.9%로 나타나 다수의 응답자들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표 10).

선택기관이 왜 시험주관기관이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조사 해본 결과 한국산업인력 공단이 주관기관이 되어야 하는 이유로는 대부분의 응답

표 8. 취득자격별 지도사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단위:%)

취득자격 항 목	안전 기술사	위생 기술사	안전 지도사	위생 지도사	기 사	산업 기사	산업 간호사	기 타	소 계
민간의 전문적 지도에 대한 인식부족	11(19.3)	9(18.8)	21(24.7)	3(20.0)	43(21.9)	49(25.8)	11(32.4)	23(25.3)	170(24.3)
지도사 업무영역의 제도화 부족	7(12.3)	12(25.0)	21(24.7)	4(26.7)	32(16.3)	27(14.2)	11(32.4)	25(27.5)	139(19.9)
재해예방기관과의 업무중복	11(19.3)	10(20.8)	10(11.8)	2(13.3)	46(23.5)	26(13.7)	11(32.4)	18(19.8)	134(19.1)
정부의 지원미흡	15(26.3)	11(22.9)	13(15.3)	2(13.3)	31(15.8)	19(10.0)	0(0.0)	8(6.6)	99(14.1)
전문지식의 부족	5(8.8)	1(2.0)	8(9.4)	2(13.3)	19(9.7)	12(6.3)	1(2.9)	7(7.7)	55(7.9)
지도사 배출 부족	5(8.8)	0(0.0)	5(5.9)	2(13.3)	13(6.6)	21(11.1)	0(0.0)	4(4.4)	50(7.1)
컨설팅 수입의 한계	3(5.3)	5(10.4)	5(5.9)	0(0.0)	11(5.6)	20(10.5)	0(0.0)	5(5.5)	49(7.0)
기타	0(0.0)	0(0.0)	2(2.4)	0(0.0)	1(0.5)	0(0.0)	0(0.0)	1(1.1)	4(0.6)
소 계	57(100)	48(100)	85(100)	15(100)	196(100)	174(100)	34(100)	91(100)	700(100)

자들이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가능, 국가의 모든 공인된 자격시험 주관기관, 국가기술자격의 활성화 및 업무의 효율성, 타 직종의 시험과 형평성 고려 등을 선택 이유로 제시하였으며,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주관기관이 되어야 하는 이유로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안전보건분야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기관, 전문인력의 배출·교육·관리의 일원화가 가능, 산업안전보건업무의 전문기관으로 지도사 제도 활성화에 역할제고가 가능, 사업장 기술지도 업무 수행기관의 기술력과 행정력을 구비, 자격의 신뢰도 및 인지도 상승가능 등을 선택 이유로 제시하였다.

지도사 제도의 폐지와 관련하여 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응답자의 79.2%가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17.3%는 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 의지를 약화시킨다. 3.5%는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재해예방 활동을 촉진시킨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지도사 제도의 폐지가 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도사 제도를 폐지할 경우 산업안

전보건법에 규정된 법적 조항 중에서 폐지해야 될 범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71.4%가 법상 지도사와 관련된 모든 규정을 폐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20.3%는 법 제 6 장의 2의 산업안전·위생 지도사 조항만 폐지, 8.3%는 재해예방단체의 인력기

준에 포함된 규정만을 폐지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도사 제도를 폐지할 경우 기 배출된 지도사의 자격을 인정해 주어야 할 범위에 대해 질문한 결과 기술사 시험의 일부 면제 등 혜택부여가 31.6%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으며

표 9. 지도사 제도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설문

항 목	빈 도 수(%)	
재검토 의견	재검토 필요	216 (80.5)
	현행유지	40 (19.5)
	소 계	256 (100)
재검토 방향	지도사제도 폐지, 기술사 활성화	165 (78.0)
	현행 지도사 제도 유지, 발전방향	47 (21.7)
	기 타	4 (1.9)
소 계	728 (100)	

표 10. 지도사시험의 주관기관

항 목	빈 도 수(%)
한국산업안전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88 (37.9)
한국산업인력공단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134 (62.1)
소 계	222 (100)

다음은 기술사의 활성화를 통해 자연흡수통합 29.6%, 제도 폐지에 따라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 21.6% 순으로 조사되었다. 기타의 내용은 자격을 계속유지 시켜야 한다와 제도시행 없이 폐지는 부당하다는 응답을 제시하였다(표 11).

IV. 고찰

현재 우리나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의 형태를 보면 대부분 정부 주도로 이루어져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조직과 업무는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면, 산업안전보건 대행기관 등 민간 재해예방기관의 조직과 업무는 축소되는 등 민간 주도의 산업재해예방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특히 1997년 IMF 경제위기 상황에 의해 기업은 산업재해발생의 위협요인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6년여가 지난 지금 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다(태순호, 2001).

지금의 현 상황과 같이 정부주도의 산업재해예방사업이 지속된다면, 민간전문기관들은 산업재해예방기술 수법의 개발 등 전문적 기술개발에 소홀하게 될 뿐만 아니라 기술적, 전문적인 정보의 단절로 이어져 산업안전보건분야의 퇴보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사업장내 근본적인 안전·보건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지도사제도의 운영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지도사의 특성화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도출한 결과 및 인식도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고찰하였다.

첫째로 안전관리 분야 기술사 제도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다.

산업안전·위생분야의 종합적인 범

표 11. 지도사제도 폐지와 관련된 설문

항 목	빈 도 수(%)	
사업주 산재예방 활동의 영향	산업재해 예방 의지약화	44 (17)
	산업재해 예방 활동촉진	9 (4)
	별 영향 미치지 않음	202 (79)
	소 계 (무응답 1명)	255 (100)
폐지해야할 법적 조항 범위	법 상 관련 모든 규정	172 (72)
	법 제6장의 2 지도사 조항	49 (20)
	재해예방단체 인력기준	20 (8)
	소 계 (무응답 15명)	751 (100)
배출된 지도사의 인정 가능한 자격 범위	자격부여 불필요	54 (22)
	기술사로 자연흡수통합	74 (29)
	기술사 자격부여	17 (7)
	기술사 시험일부면제	79 (31)
	기사자격부여	19 (8)
	기 타	7 (3)
	소 계	1,752 (100)

위를 살펴보면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을 기술적인 컨설팅 이외에도 경제시스템 전반의 외부 비용의 감소와 산업안전보건 자원의 가치를 높이는 산업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광범위한 범위의 컨설팅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인증된 자격자를 통해 전문화된 지도·조언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따라서, 기술사를 컨설팅 업무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하기 위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지도사에 대한 규정을 기술사 제도로 전환하며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한 안전관리분야의 기술사 자격시험으로 지도사 시험을 통합운영하고 기술사 자격 보유자를 노동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일정교육을 이수한 후 지도사 업무를 수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추진한다.

일본(일본노동안전위생컨설팅지회, 1993; 일본노동성, 1994)·미국(AIHA, 1989; AIHA, 1993; OSHA, 1978; Patty's Industrial Hygiene and Toxicology, 1991)의 지도사 제도를 보면 일본은 우리나라

와 제도 자체는 매우 유사하지만 산업안전관리 분야의 기술사 제도가 없어 산업안전위생 컨설턴트가 사업장의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실제적인 안전위생분야의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안전위생분야의 민간 기구에서 다양한 시험을 통해 우수한 전문가를 배출하고 국가 및 수요자는 이를 인증함으로써 전문가의 활용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업무수행능력이 유사한 자격을 일원화하고, 전문가들이 수행할 새로운 업무 영역의 개발을 통해 동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의 경제화, 노동인구의 고령화, 국제화 등에 따라 발생하는 산업안전위생상의 새로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술사를 통해 사업장 상황에 적합한 산업재해방지대책 수립 방법을 개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국내 산업안전위생 컨설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신흥 개발 국가로 컨설팅 시장을 확대해 나갈 수 있으므로 국가경쟁력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자격제도의 통일화를 통하여 민간의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고, 유사한 자격 제도 운영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할 수 있어 정부의 안전위생 시장의 수요창출을 위한 여건 마련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

둘째는 지도사 제도의 개선을 통한 발전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다.

국가기술자격법 상 기술사는 기술과 기능을 겸정하는 자격제도인데 반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안전·위생 지도사는 기능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의 경험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여 기능적인 자문을 포함한 사업의 경영 측면에서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전략이나 방향 등을 자문하는 전문가를 선발하기 위한 제도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의 내용은 지도사의 활성화 중심으로 운영하고, 시험 계획, 공고, 실시 등에 대해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서 통합관리 하는 방향으로 지도사 제도의 방향을 수립하고, 안전·위생분야의 실무경력을 갖추고 응용능력이 우수한 자격자만을 선발하여 사업장에서 실제 필요한 전문가로서 인식할 수 있는 고급 자격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 정부는 점차적으로 공인된 민간 인력 중심의 자율 안전관리를 이룰 수 있도록 매개 역할을 강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부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기술사 업무의 활성화방안으로는 기술사를 선진국과 같이 컨설팅 업무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지도사에 대한 규정을 기술사 제도로의 전환과 건설안전기술사의 전문화와 업무 세분화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지도사 업무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지도사의 지속적인 배출과 지도사 제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정부에서 안전보건업무를 지원해 줄 수 있

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다양한 분야의 기술지도가 가능하도록 지도사 업무영역의 확대 필요성을 제시한다.

지도사 배출제도의 국가기술자격법령으로 일원화한다면 산업안전공단에서 당초 배출예정인력보다 많은 지도사를 배출할 수 있으며, 시험관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겠다.

지도사의 안전보건 자문위원으로 활용하여 지도사가 안전보건진단, 중대재해조사 등 각종 산업안전공단의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실무의 경험과 기술을 쌓는 교육·훈련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지도사에 대한 직접적인 홍보를 통한 사업장의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다.

세 번째 향후 과제로서 무엇보다도 먼저 지도사 제도의 나아갈 방향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방향이 수립된다면, 지도사 제도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분명해 질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안의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V. 결 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안전·위생지도사 제도의 운영실태 및 운영상의 문제점등을 파악하여 지도사 제도의 향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지도사, 기술사, 재해예방전문단체 및 기업체 전문가에게 배포한 설문내용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응답자 총 256명에 대한 분석 결과, 근무분야는 기업체가 42.6%, 업무분야는 산업위생업무가 38.7%, 취득자격구분은 산업위생관리기사가 23.8%로 가장 많았다.

2. 96년 제1회 지도사 배출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재예방 업무 실적 조사 결과, 안전분야를 보면 1997년 47건에서 매년 감소하여 2002년 9건이었으며, 41명의 지도사 중 5명만이 사업주 요청에 의해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하였을 뿐 전반적으로 지도사의 업무 실적은 저조하게 나타났다.

3. 기 배출된 지도사가 사업장 산재 예방활동에 필요한 기술적, 전문적 지도 및 조언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는 매우 낮은 것(3.1%)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전문적 지도에 대한 인식부족, 제도화 부족, 업무중복, 정부의 지원미흡 순으로 지도사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지도사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지도사 제도의 폐지가 사업주의 산재 예방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72.0%의 전문가들이 법상 지도사와 관련된 모든 규정을 폐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대부분(67%)의 응답자들이 현행 지도사 제도를 폐지할 경우 기술사 제도로의 흡수 또는 통합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1996년 지도사가 배출된 이후 6년간의 업무 실적이 저조하며, 기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대행 기관 등과 인력 및 업무영역의 중복, 전문적 지도에 대한 인식부족, 제도화 부족, 정부의 지원미흡 등으로 인해 독자적인 제도로 정착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도사 제도의 폐지가 사업주의 산재예방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기존에 배출된 169명의 지도사 중 148명(약 88%)이 기술사를 소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지도사 제도를 기술사 제도에 흡수 또는 통합하여 컨설팅 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REFERENCES

-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업무 시행 지침, 1995.
-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참고자료, 2003.

노동부, 중소기업 특성을 고려한 작업환경 개선 모델 연구, 2001.
박종성, 김현욱, 원정일, 산업위생분야 국가 자격제도의 운영현황과 발전방안, 한국산업위생학회지, 제9권, 제2호, 1999.
일본 노동안전위생 컨설턴트회지, 1993.
일본 노동성, 노동안전위생법, 1994.
태순호, 김용수, 국내외 안전관리 제도 비교·분석, 한국산업안전학

회지, 제17권, 제4호, 2002.
(사)한국산업안전위생지도사 연합회, 제1회 산업재해 예방 세미나 자료집, 2001.
한국산업안전공단, 21세기 산업보건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1999.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제도개선 방안연구, 2001.
American Industrial Hygiene Association : Industrial Hygiene Consultants, Am.

Ind. Hyg. Assoc. J(50). 1989.
American Industrial Hygiene Association : Consultants Listing, Am. Ind. Hyg. Assoc. J(54). 1993.
OSHA Technical Appendix N : Guidelines for Selecting and Using an Industrial Hygiene Consultant,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8.
Patty's Industrial Hygiene and Toxicology, Fourth Edition, Role of the Industrial Hygiene Consultants, 1991.